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경만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4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9일
발 의 자 : 경만선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춘례, 김태호, 김화숙,
문병훈, 신정호, 안광석,
오한아, 이종환, 최영주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
(안 제12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(생략)</p> <p>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<u>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2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2개월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